금융학부 학생회칙

- 전문 –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토대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본학부과의 설립배경이다. 본 학부는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출범시킨 독립학부이며 금융 관련 이론 및 실무 적용능력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을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리더로 진출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2020년까지 ‘교육 및 취업에서 아시아 탑 클래스 금융학부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본 학생회는 학우들의 선도적 위치에 서서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 지침을 성문화 하는 바이다.

1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금융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설치) 본회는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내에 둔다.
3조(회원) 본회는 금융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4조(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학년 과대표, 집행부로 구성된다.
5조(특별기구)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6조(자격) 본회의 자격은 금융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준회원으로서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 정지가 된다.
7조(권리)
1항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다.
2항 : 회칙 개정 발의 및 임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8조(의무)
1항 : 회칙 준수 및 학생회비를 납부한다.
2항 : 학생회비 미 납부시 불이익을 받는다.(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납부시 즉시 해제한다.)

3장 학 생 총 회

9조(지위) 본회의 최고 의결, 권력기구이다.
10조(구성) 본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학생회장이다. (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나 전대 학생회장이나 대신한다.)
11조(권한) 본회는 다음의 각항의 권한을 가진다.
1항 : 예산 및 결산보고를 받는다.
2항 : 정, 부학생회장의 탄핵 소추, 해임 결정
3항 : 회칙 개정
4항 : 학부의 중대사 논의, 결정
12조(회의 및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1항 : 정기 총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항 : 임시 총회는 정기 총회 안건 이외의 논의 사항이 있을 때 학생회장, 회원의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총회 성사의 기준은 전체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13조(의결)
1항 : 정기총회는 회원 1/5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 임시총회는 회원 1/5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2학기 경우에 있어 정기총회와 같지만, 학생회장의 인준과 탄핵소추권은 없다.)

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1항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상설 대의기구이다.
2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 및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의 발의
나. 임시학생총회의 개최
다. 학교측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제15조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정 . 부회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단, 참관인의 구성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17조 (소집)
1항 :정기운영위원회는 학기 중 1주에 1회 이상, 방학 중 1월에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2항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3항 :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단,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4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학생총회에서 참석인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 및 내용,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년대표

19조(지위)
1항 : 학생회장은 금융학부에서 1명이 선출되어 본회를 대표하고 학생총회 의장이 되며 집행부를 임명한다.
2항:부학생회장은 금융학부 1명으로 구성되어 회장을 보좌하게 되며 회장 궐위 시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항 : 1학년 과대표는 1학년을 대표하며 해당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만 출마 가능하다.
20조(임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학년 과대표의임기는 당선 후부터 다음해 선거일까지로 한다.(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학년 과대표가 궐위 시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보궐선거를 한다.)

6장 소 모 임

21조(목적) 소모임은 학우들의 자기개발과여가활동 지원과 단결 및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22조(구성)
1항 : 금융학부 교수님들의 인준을 받은 소모임으로 구성된다.
2항 : 소모임 대표 포함 5명을 최소인원으로 한다.
3항 : 학우들에게 한 학기에 한번씩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23조(의무) 소모임은 금융학부 학생회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장 집 행 부

23조(지위) 본회의 제반 활동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24조(구성)
1항 : 집행부는 기획국, 사무국, 정보국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부원을 둘 수 있다.
2항 : 필요 시 임시 부서를 둘 수 있다.
3항 : 각 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5조(기능) 학생 총회,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사무국 :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보조금(학부 지원금)으로 1년간의 활동사항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기획국 : 전반적인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정보국 : 학교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 제반 기술을 담당한다.

8장 재 정

26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18만원)과 학부 보조금으로 한다.
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28조(재정관리)
1항 : 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학기 별로 한번씩 공고한다.
2항 :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
3항 : 운영비는 학생회비의 8%이하로 책정한다.

9장 선 거

29조(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30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31조(피선거권) 다음의 각항의 사항을 갖춘 자는 정, 부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1항 : 학생회장은2학기 이상, 부 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 필 한 자로 한다,
2항 : 본회의 1/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2조(시기)
1항 : 임기 년도 전해 12월 초에 실시한다.
2항 : 학생회장은 선거공고를 5일 전에 공고한다.
33조(입후보 및 당선)
1항 : 정, 부학생 회장은(선거)등록을 5일전에 이전 학생회에 하여야 한다.
2항 : 정, 부학생 회장은 공동 입후보하며, 본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 하였을 시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3항 : 단일후보일 경우, 본회의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신임득표를 받아야 한다. (2학기말 선거일 경우, 4학년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만 선거권자 인원과 투표율에 반영한다.)
3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회장이 집행부 및 1학년의 대표와 협의에 의한다.

10장 탄핵, 소추권

35조(탄핵 벌의) 학생회원이 책무 및 권한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 1/3이상의 결의를 통해 발의된다.
36조(공고기간) 탄핵 발의 대표자는 탄핵 발의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7조(교섭기간) 탄핵발의 공고와 더불어 7일간의 교섭기간을 갖는다.
38조(소추) 탄핵발의를 통해 임시 총회에서 소추한다.
39조(의결) 임시 총회에서 소추가 결정되면 학생회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40조(공표 및 발효)
1항 : 탄핵 소추 발의자에 의해 공표된다.
2항 : 선거법에 따라 학생회원을 재 선출한다.

11장 회 칙 개 정

41조(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원의 1/10이상의 결의나 요구로 발의할 수 있다.

42조(공고) 회칙개정 공고는 3일전에 한다.
43조(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만 가능하다.

부칙

1조(발의)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
2조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조 본회의 회칙은 2012년 3월 12일부로 즉시 시행한다.(위 회칙은 2014년 1월 13일 임시학생총회에서 수정보완 및 의결되었습니다. 공표일은 2013년 1월 14일입니다)
4조 본회의 회칙은 2012년 3월 12일부로 즉시 시행한다.(위 회칙은 2025년 3월 6일 정기학생총회에서 수정보완 및 의결되었습니다. 공표일은 2025년 3월 14일입니다)